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523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다. 제출일자 : 2015. 6. 10.
- 라. 회부일자 : 2015. 6. 17.

2. 개정이유

- 2015년 8월 24일자로 초등학교 1개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개원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 위치변경 1개교

위치변경(안 별표1)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서울송신초등학교

(종로구 종로58길 30 ⇒ 성동구 하왕십리동 549)

나. 병설유치원 : 위치변경 1개원

□ 위치변경(안 별표7)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서울송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종로구 종로58길 30 ⇒ 성동구 하왕십리동 549)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 해당 없음.

라. 기타 :

○ 입법예고 : 2015. 5. 13.(수) ~ 6. 1.(월) (20일) ※ 의견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 : 해당 없음.

○ 부패영향 평가 : 해당 없음.

○ 규제심사(규제신설, 규제폐지, 규제완화, 규제강화)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523호로 제출되어 2015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로구 종로58길 소재 서울송신초등학교를 성동구 하왕십리동 549번지 일원으로 이전함(토지 5,648 m^2 , 건물 9,622 m^2)에 따른 후속적인 입법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나. 주요 검토의견

1) 서울송신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이전 개요

- 서울송신초등학교는 구도심 지역인 종로구 종로58길 30(송인동)에 소재한 학교로 2015년 4월 기준으로 총 학생수가 184명인 소규모 학교(200명 이하)입니다.

[표-1] 서울송신초등학교 학생 및 학급수(2015. 4. 1)

구분	학생 및 학급수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학급	
학급수	3	2	2	2	2	2	2	15(2)
학생수	50	32	20	21	31	23	7	184(7)
학급당 학생수	16.7	16	10	10.5	15.5	11.5	3.5	12.3

- 교육부는 지난 2011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신설 수요 관리」 지침을 통해 주택재개발과 같은 학교신설 수요가 발생할 경우 서울송신초등학교와 같은 구도심 소규모 학교를 지역여건에 맞게 통폐합하거나 이전·재배치 할 것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왕십리 신설수요 대체를 위한 기존 학교 이전 재배치 등의 수용 계획을 재검토한 후 “송신초 이전 재배치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의회에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였고, 지난 제242회 정례회에서(2012. 11. 23) 동 안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표-2] 서울송신초등학교 이전 추진 경과

- 2011.4.29. 서울시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 왕십리 신설수요 대체를 위한 기존 학교 이전 재배치 등 수용계획 재검토
 - ⇒ 중부 관내 소규모 학교(송신초) 이전·재배치 검토
- 2011.9.19. 교과부 정기 중앙투·용자심사위원회 심사 “재검토” 결정
 - 왕십리뉴타운내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송신초 이전계획” 제출
 - 부지 면적 및 학급규모 재검토
- 2012.7.19. 교과부 중앙투·용자심사위원회 심사 “조건부 승인”
 - 인근 어린이공원내 학교운동장 면적 추가 확보
- 2012.9.14. 송신초 이전 재배치 기본 계획 수립(중부)
 - 학교이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2012.9월~이전 완료시까지)
 - 유관기관 협의, 학부모 및 주민설명회,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등
- 2012.11.13. 종로구청장 및 종로구 의회와의 업무협의
- 2012.11.20. 송신초 학부모대표와 협의회 개최
- 2012.11.23. 서울시의회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 2012.11.26. 송신초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 송신초 이전 필요성 설명 및 학부모, 주민 요구사항 수렴 등
- 2012.12.7. 송신초 이전 재배치(안) 행정예고
 - 2015.3.1. 이전 재배치 완료 및 개교, 신축 및 개교 준비는 성동교육지원청에서 별도 추진

2) 이전학교 현황

○ 서울송신초등학교 시설공사 공정율은 2015년 5월 기준으로 83%에 이르고 있으며 내부마감공사가 끝나면 2015년 7월 23일 준공예정에 있는바, 개교일(8월 24일) 이내에 학교이전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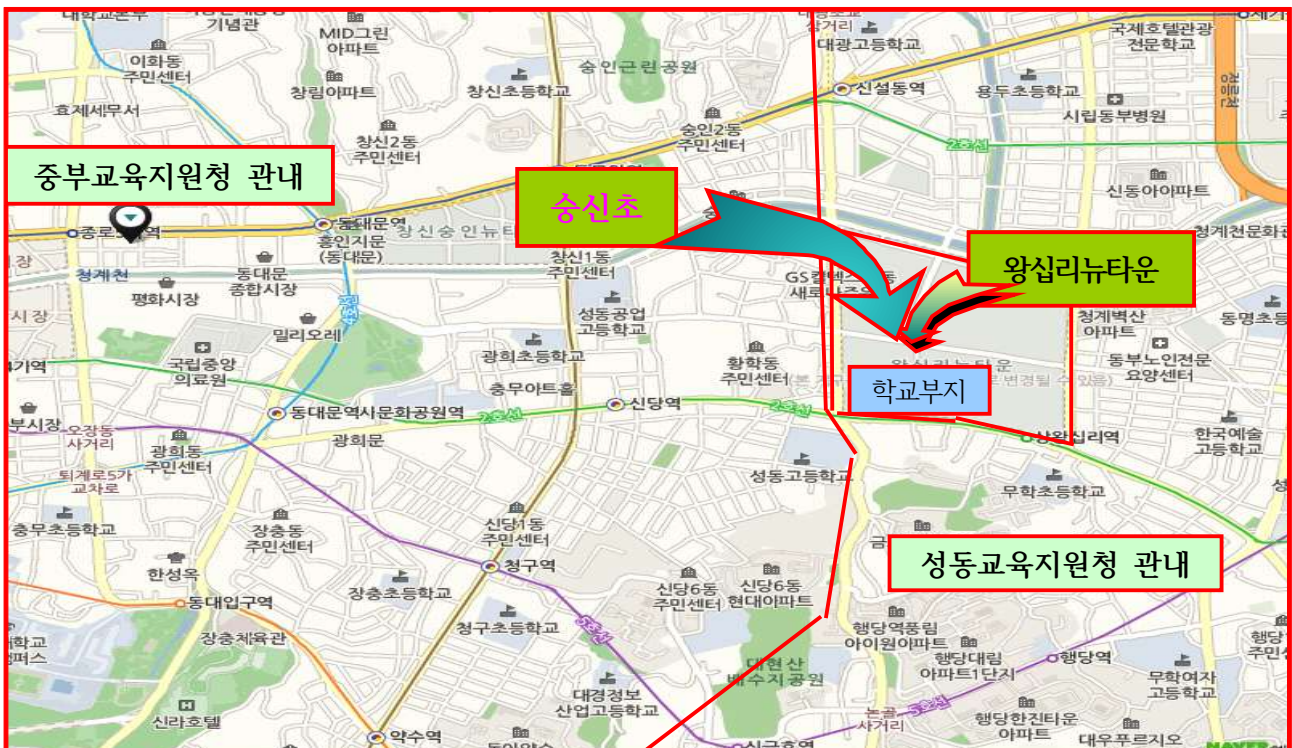
[표-3] 학교이전에 따른 학생수용계획

① 학생수용계획

학교명	구분	학생수	학급수	급당인원
송신초	개교	535	26 (특수2포함)	22.3
	완성	871	29 (특수2포함)	32.3

② 2015~2017학년도 학생수용계획

학교명	2015년			2016년			2017년		
	학생수	학급수	급당인원	학생수	학급수	급당인원	학생수	학급수	급당인원
송신초	535	26 (특수2포함)	22.3	491	25 (특수2포함)	21.3	871	29 (특수2포함)	32.3



3) 종합검토 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서울송신초등학교가 이전하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출된 것으로 적법성 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과는 별개로 학교 이전에 따른 이적지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적지 학교시설에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현재 4곳¹⁾뿐인 대안교육기관을 확충한다거나, 1곳²⁾뿐인 어린이도서관²⁾의 별관 또는 제2어린이도서관 설립부지의 활용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을 생각되며 인접한 종로산업정보학교의 교육시설 확충부지의 활용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활용방안이 모색될 수 있으므로 이적지에 대해서는 교육정책 차원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후속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다솜학교, 서울실용음악학교, 여명학교, 지구촌학교임.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9길 7에 위치하고 있음.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

[시행 2015.1.20.] [법률 제13003호, 2015.1.20., 일부개정]

-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